

인천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0가단2336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겸 원고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의 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박정혁, 양선화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1. C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희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에게 135,27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겸 원고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이하 ‘원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게 135,270,340원 및 그 중 135,156,395원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A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A은 ‘E’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정비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3. 2.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원금 70,000,000원(대출금의 100%), 보증기한 2014. 2. 21.로 정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A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몇 차례에 걸쳐 순차 변경되다가 2019. 2. 12. 보증원금 57,000,000원, 보증기한 2020. 2. 14.로 최종 변경되었다.

2) A은 2019. 8.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9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원금 77,350,000원(대출금의 85%), 보증기한 2024. 8. 27.로 정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A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A은 2019. 11. 25. E를 폐업하였다. 이는 1, 2차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하는바,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 2. 12. 중소기업은행에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57,641,063원(= 원금 57,000,000원 + 이자 641,063원),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78,184,222원(= 원금 77,350,000원 + 이자 834,222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날 A의 보증료환급금 등 668,890원을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구상금에 충당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업체 시설물, 영업권 등의 순차 양도

1) A과 피고 C은 2019. 10. 21.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정비업체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업에 관한 시설장비 및 기타 시설을 대가 없이 양도하되, A은 위 정비업체의 모든 채권채무를 책임지고 피고 C은 위 정비업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정비업체의 기계장비 등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피고 회사에 A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정비업체의 모든 기계장비 등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소 제기, A의 파산 및 원고 파산관재인의 선임 등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 6. 3.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원고의 구상원리금 채권액 135,270,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법인격남용 또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A은 2020. 6. 22.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833, 2020하면1833). 인천지방법원은 2021. 1. 22.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같은 날 원고 파산관재인을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3) 원고 파산관재인은 2021. 5.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부분을 수계하는 것을 허가받고 2021. 6. 28. 위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수계를 하였으며, 2021. 8.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현재의 주위적 청구와 같이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21. 8. 18.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으로부터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파산관재인인 주장 요지

A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정비업체의 모든 기계장비 등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할 무렵 이미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거나 늦어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A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시설물과 영업권의 양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4호가 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에 원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위 채무자회생법 조항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업체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수한 이후 비용을 지출하여 시설물을 수리하였으므로 원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 파산관재인은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A이 양도한 시설물의 가액 325,818,310원의 범위 내에서 135,270,34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 파산관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소정의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서 말하는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504 판결 등 참조).

2) A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2019. 10. 21.경 이 사건 정비업체의 기계장비 등 시설물과 매출채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A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들 2021. 3. 17.자 준비서면 1쪽 등 참조).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정비업체의 기계장비 등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하더라도 기존의 채권(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19. 10. 21.까지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채무는 여전히 A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이 2019. 10. 21.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정비업체의 매출채권에 기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합계 54,857,093원에 불과한 반면(원고 신용보증기금 2021. 8. 3.자 준비서면 3~9쪽 참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2019. 11. 30. 이후 A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은 거래처의 착오로 피고들의 계좌가 아니라 A의 계좌에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대금까지도 입금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 양도계약 당시 A의 채무는 1, 2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상이 된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원금만도 합계 161,000,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A은 2019. 11. 25. E를 폐업함으로써 1, 2차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20. 6. 22. 파산신청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A은 2019. 10. 21.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정비업체의 기계장비 등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적극재산은 합계 54,857,093원의 매출채권만이 남게 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여전히 최소 161,000,000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A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A은 늦어도 E를 폐업한 2019. 11. 25.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지급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A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은 파산채무자가 지급정지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소정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

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각 법리는 파산관재인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업체의 기계장비 등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수한 이후 합계 48,273,300원을 지출하여 기계장비 등을 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정비업체의 시설물 가액이 양도계약 체결 무렵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정비업체의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위와 같이 가액이 현저히 증가한 기계장비 등 시설물과 분리하여 원물반환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결국 원고

파산관재인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업체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2018. 12. 31. 기준 위 정비업체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 기구, 비품, 시설장치 등을 합산한 유형자산의 가액은 325,818,31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개월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시점인 2019. 10. 21.에도 그와 같은 가액이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들은 위 각 시설물 등 유형자산은 2018. 4.경 경매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정비업체의 시설물 가액은 2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업체의 시설물 등 유형자산에 대하여 2018. 4.경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이 2018. 4.경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시설물 등이 이 사건 정비업체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A이 2018. 4.경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업체의 기존 시설물 등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은 약 2억 원을 들여 다시 위 정비업체의 시설물 및 장비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A의 증언은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시점인 2019. 10. 21.경 이 사건 정비업체의 기계장비 등 시설물의 가액은 2억 원 정도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소정의 부인권 행사 대상인 이 사건 양도계약에 있어서 피고 C은 수익자, 피고 회사는 전득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정비업체의 기계장비 등 시설물의 가액으로 추단되는 325,818,310원(여기에다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가액을 더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 파산관재인이 구하는 135,27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원고 파산관재인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파산관재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양승우